신한 알.쏠 적금 상품설명서

- 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 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 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. 상품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: 신한 알.쓸 적금

- 상품특징: 고객이 원하는 가입 기간을 선택하여 월 납입 한도 내 신규와 입금이 자유롭고,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이자율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

2. 거래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		
가입대상	실명의 개인 (1인 다계좌)		
상품유형	유형 자유적립식		
계약기간	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(일단위 지정 가능)		
최저가입금액	최소 1천원 이상		
최고가입금액	월 300만원 이하		
	- 고객이 원하는 날짜/ 이체주기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합니다.		
	-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, 해당 금융회사 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.		
자동이체	[다른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시 유의사항]		
	자동이체일을 말일로 지정할 경우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		
	입금될 수 있으며, 월 저축한도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.		

기본이자율	12개월	월 이상 247	배월 미만	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	36개월	
(2024.11.08	연 2.90%			연 2.95%	연 3.00%	
현재, 세전)	※ 실제 적용이자율은 통장 인자 내용 또는 비대면 채널에서 계좌 상세조회 시 확인 가능				확인 가능	
				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^실 에 따라 <u>최고 연 1.3%</u> 우대	않습니다.	0.711
	구분	우대항목	적 용 조건			우대 이자 율
	1	소득이체		신한은행 입출금통장에 건별 릴에 이 예금에 입금한 금액어		연 0.6%
	2	카드이용	로 지정	신한카드(신용/체크) 결제계: 하고, 해당 계좌에서 카드 결: 예금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유	제금액이 출금된	연 0.3%
OLMUITIG	3	오픈뱅킹		오픈뱅킹 출금이체를 통하여 우 해당 입금한 금액에 대해		연 0.6%
우대이자율 (2024.11.08 현재, 세전)	4	청약보유	이 예금의 만기 시점에 신한은행 청약상품(청약부금, 청약예금,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)을 보유한 경우 입금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우대이자율 적용			연 0.3%
	5	마케팅 동의	이 예금의 만기 시점에 「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동 의서(상품서비스 안내 등)」에 동의한 경우 입금된 금 액 전체에 대하여 우대이자율 적용			연 0.1%
	 ※ 소득이체, 카드이용 거래실적 인정 기간은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까지이며, 신규월, 만기 전월, 만기월 입금 금액에 대하여는 전고객에게 우대이자율을 제공합니다. ※ 소득이체의 경우, 신한은행 본인 계좌간 이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※ 카드이용 실적의 경우, 납부일이 월말 공휴일로 인해 익월 이체된 경우 당월 실적이 아닌 익월 실적으로 인정됩니다. 					
최종이자율	12개월	월 이상 247	배월 미만	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	36개월	
(2024.11.08		면 4.20%)	연 4.25%	연 4.30	
현재, 세전)	※ 우대	 이자율 최고	. 연 1.3%	 적용 시		
원금또는이자 지급방법	만기일시지급식: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					

○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율 적용 ○ 1개월 미만: 연 0.10% 중도해지 ○ 1개월 이상: 기본이자율 X(1-차감률)X 경과월수/계약월수 이자율 (단, 연 0.10%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.10% 적용) (2024.11.08 ※ 차감률(2024.11.08 현재) 현재, 세전) 경과기간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9개월이상 11개월이상 차감율 80% 70% 30% 20% 10% ○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(원미만 절사) 기본이자율×(1-차감률)×3과월수/계약월수(단, 최저 연 0.10%)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연 0.10% 신규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1개월 만기일 ○ 만기후 1개월 이내: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의 1/2 (단, 최저금리 0.10%) ○ 만기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: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의 1/4 (단, 최저금리 0.10%) 만기후 6개월 초과: 연 0.10% 만기후 만기일 당시 가입기간별 이자율 일반정기적금 이자율의 1/2, (2024.11.08 만기일 당시 가입기간별 (단, 최저금리 0.10%) 현재, 세전) 일반정기적금 이자율의 1/4 (단, 최저금리 0.10%) 연 0.10% 만기일 1개월 6개월 6개월초과 ※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

	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(예치일수)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					
만기이자 산출근거	지급					
	1회차					
	입금금액x이자율x 예치일수/계약기간					
	2회차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/계약기간					
	•					
	36회사					
	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/계약기간					
	-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(모바일, 인터넷뱅킹)에서 해지 가능합니다.					
계약해지 방법	-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.					
	- 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영업점에서 前영업일에 해지할 경우,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					
	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					
일부해지	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2회 가능					
	※ 일부해지금액의 이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중도해지 이자율로 지급 -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					
원금또는이자	- 계획에 합류, 기합류, 발견발생 등이 등록할 경우 원급 및 이지 지합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					
지급관련제한						
시합한신제한	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					
	- 고객이 원하는 날짜/ 이체주기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합니다.					
	-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, 해당 금융회사 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.					
자동이체	[다른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시 유의사항]					
, 100 lv.11	자동이체일을 말일로 지정할 경우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					
	입금될 수 있으며, 월 저축한도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.					
재예치	불가					
거래제한	1) 공동명의, 계좌분할: 불가					
	2) 양도 가능, 담보제공: 가능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100%이내로 가능)					
	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 으로 은행이					
자료열람	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계약에 관련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					
요구권	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					
	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				
세제혜택	비과세종합저축: 가능					
	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.					
	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.					

위법계약해지권	-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			
	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			
	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			
	-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			
	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			
이용제한 사항	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			
예금 해지 시	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			
불이익	- 단기 전 에름에서 시 중도에서에서 역용 -			
	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			
휴면예금 및 출연	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			
유단에는 뜻 같은	1397)"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,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.			
	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			
예금자보호여부				
예금보험공사	해당 :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			
	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
수수료	해당없음			
인용출처	해당없음			

3. 유의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기전에 '금융상품설명서' 및 '약관'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<u>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는 경우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</u>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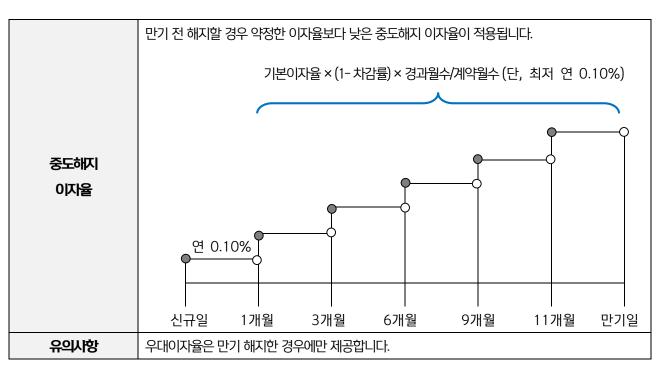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77-8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shinhan.com)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한 알.쓸 적금 요약 상품설명서

	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		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	36개월	
최고이자율	연 4.20%		연 4.25%	연 4.30%	
	2024.11.08 현재, 세전, 12개월 기준				
	우대이율 최고 연 1.3% 포함 (자세한 우대이자율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)				
계약기간	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(일단위 지정 가능)				
가입대상	실명의 개인 (1인 다계좌)				
가입 및 월납입금액	1천원 이상 월 300만원 이하				
재예치	Χ	자동해지 가능			
일부해지	0	2회까지 가능			
예금담보대출	0	납입액의 100%까지 가능			
예금자보호	0	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			
세제혜택	O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				

▲ 유의사항 |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, 홈페이지(www.shinhan.com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※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,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 또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.

<부록>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명
압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•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
질권설정	•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
출연	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시간	• (해당 기간을) 완전히 지나간 시간 *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